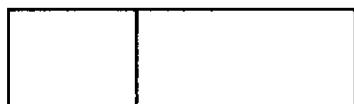


[10]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8. 6.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제안이유

-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학교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 “양주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와 “양주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른 해촉 규정의 신설과 「평생교육법」 개정(2007. 12. 14)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골자

-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된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 기능과 양주시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구성된 “양주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 기능을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 함(안 제8조)
-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장기치료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함(안 제10조의2)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학교지원담당이” 을 “교육지원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보고로 갈음한다.

4.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 기능
5.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에 의한 “양주시 평생학습 추진 위원회” 기능
6. 기타 교육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 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에 의한 "양주시 교육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에 의한 "양주시 교육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중 "평생교육법 제4조"를 "「평생교육법」 제5조"로 한다.

소관 실·과		주민생활지원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호승
	당 직위·성명	교육지원 담당 이정주
	담당자 성명·전화	김미옥(☎820-2777)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3<생 략>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신 설>	1~3<현행과 같음> 4.<삭 제> 4.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의 기능 5.<신 설> 6.<신 설>
제7조(간사)----- 담당이-----	제7조(간사)----- 업무담당주사가-----
제10조의2 <신 설>	제10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 할 때